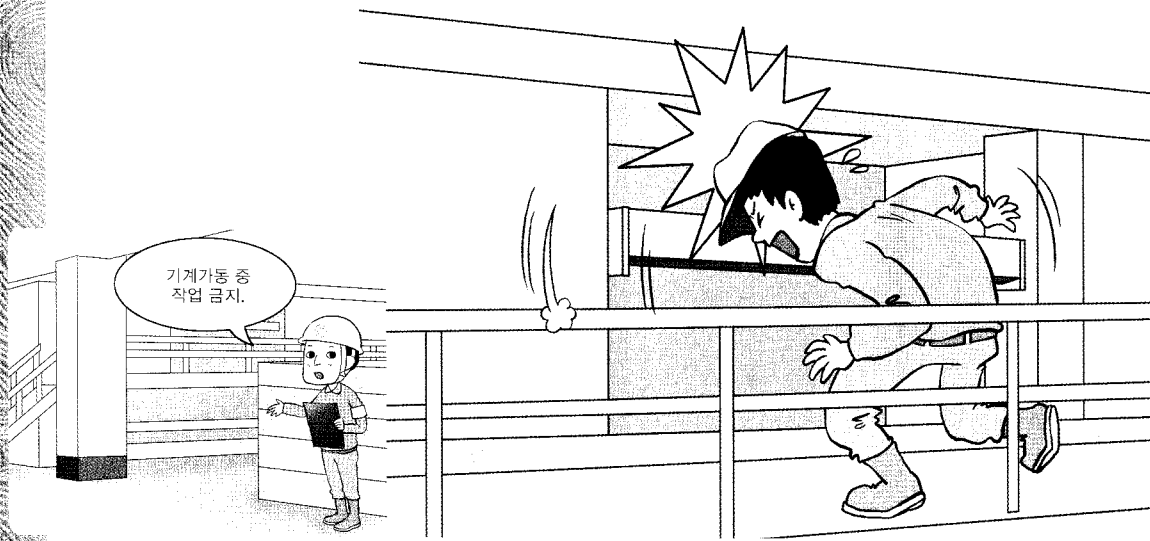


자동포장기의 파렛트상승 콘베이어와 기계프레임 사이에 협착

* 업종 : 지류제품제조업 | 생산품 : 종이선별, 포장 | 기인물 : 자동포장기 | 재해유형 : 협착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



1. 재해발생개요

피해자가 종이 자동포장기에서 종이(백상미색, 636×939)를 포장하던 중 파렛트상승 콘베이어와 기계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협착 되어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종이자동포장기에서 종이(백상미색, 636×939)를 포장하던 중 후단부분 스택커 파렛트상승 콘베이어가 상승되는 과정에서 리프트위에 있던 pallet가 틀어져 있음을 발견하고, 순간적으로 파렛트 위치를 교정하고 나오던 중 상승하는 파렛트 상승콘베이어와 기계프레임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
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가동되고 있는 설비에서 파렛트 위치 교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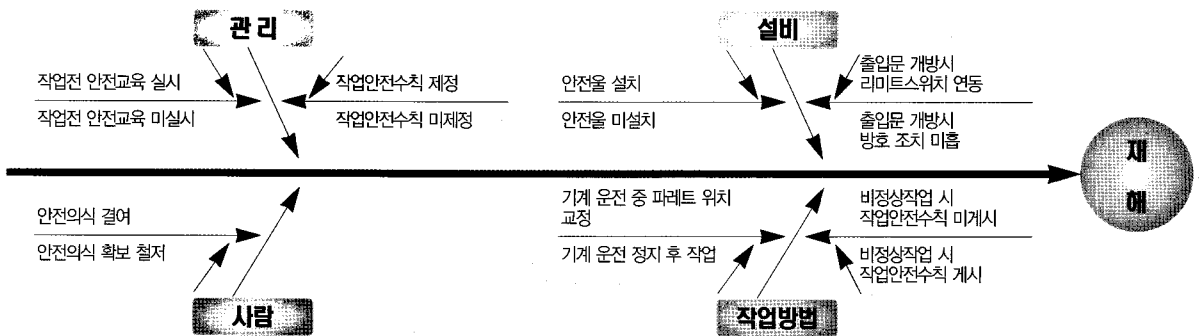
- (2) 위험장소내 접근
- (3) 작업안전수칙 미준수

나. 예방대책

- (1) 위험구역 내 접근금지 시설 설치
- (2) 출입문 시간과 리미트스위치 연동
- (3) 작업안전수칙 제정과 준수 철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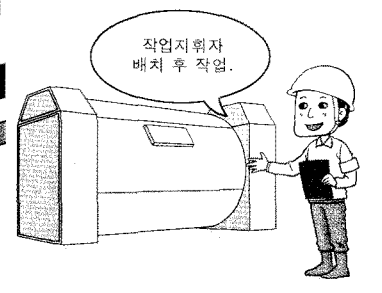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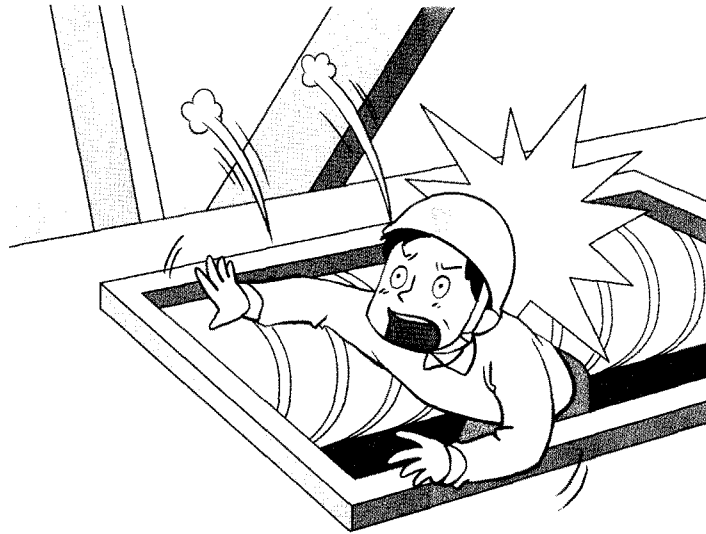
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믹서기 내부 청소작업 중 믹서기에 협착

*업종 :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 | 생산품 : 콘크리트 | 기인물 : 믹서기 | 재해유형 : 협착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



1. 재해발생개요

피재자가 믹서기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신호체계미흡으로 믹서기 안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통제실에서 전원을 작동시켜 피재자가 믹서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피재자가 믹서기 안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믹서기 밖에서 작업을 지켜보던 직원이 통제실로 가서 청소용구를 가지러 왔다가 나간사이 통제실 안에서 뒤돌아 서있던 직원이 청소가 끝난 줄 알고 믹서기 전원을 투입하여 믹서기 안에 있던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
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전원을 투입 전 청소의 진행 상태의 미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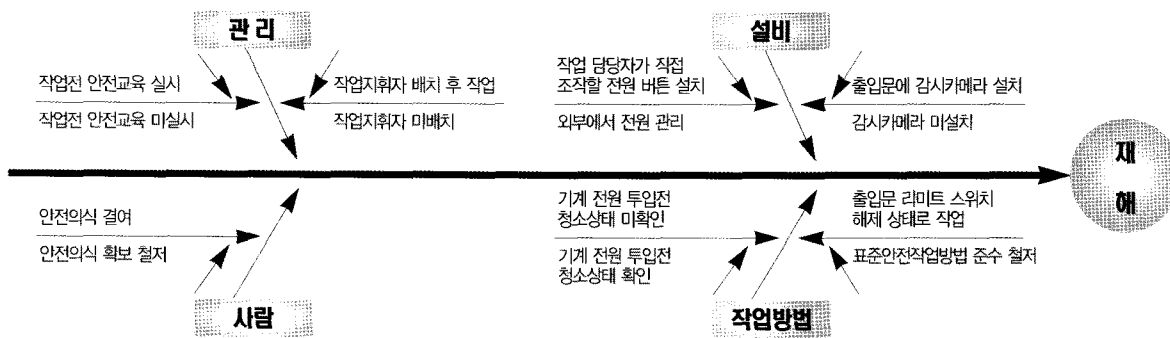
- (2) 작업 지휘자 미배치 및 작업표준서 작성 미흡
- (3) 출입문 리미트 스위치 해제상태에서 작업 실시

나. 예방대책

- (1) 작업담당자가 직접 믹서기 전원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
- (2) 작업지휘자 배치후 작업
- (3) 믹서기 출입문 양쪽에 감시카메라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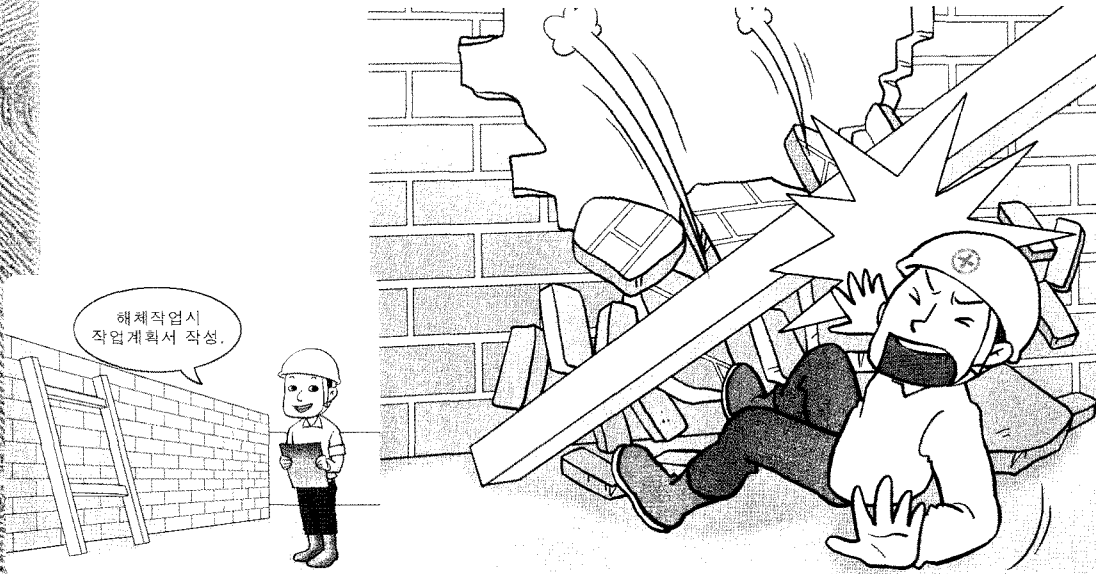
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소성로 벽체해체 작업중 벽체 붕괴로 벽체에 협착

*업종 : 토석제품제조업 | 생산품 : 점토벽돌 | 기인물 : 소성로 벽체 | 재해유형 : 협착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



1. 재해발생개요

소성로벽체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 동료직원과 작업을 하던 중 소성로벽체를 지지해주는 철골빔을 절단 하는 순간 벽체가 붕괴 되어 피해자가 붕괴된 벽체에 깔려 გადა 출혈로 사망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피해자와 동료작업자가 소성로 벽체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성로 벽체를 지지해 주고 있던 철골빔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절단하자 소성로의 벽체가 일부 붕괴되면서 철골빔 하단을 절단하던 피해자를 덮쳐 우대퇴골방상골절로 인한 동맥 파열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
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소성로 지지해 주는 철골빔을 한꺼번에 절단

- (2) 해체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작성
- (3) 붕괴 위험이 있는 방향에 버팀목 미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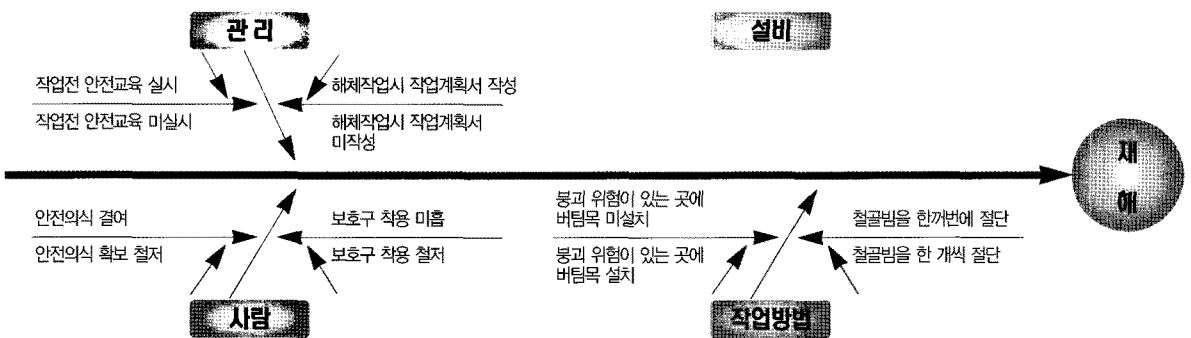
나. 예방대책

- (1) 소성로 해체시 철골빔은 한 개씩 절단하고 해체
- (2)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
- (3) 붕괴 위험이 있는 방향에 버팀목 설치

4. 범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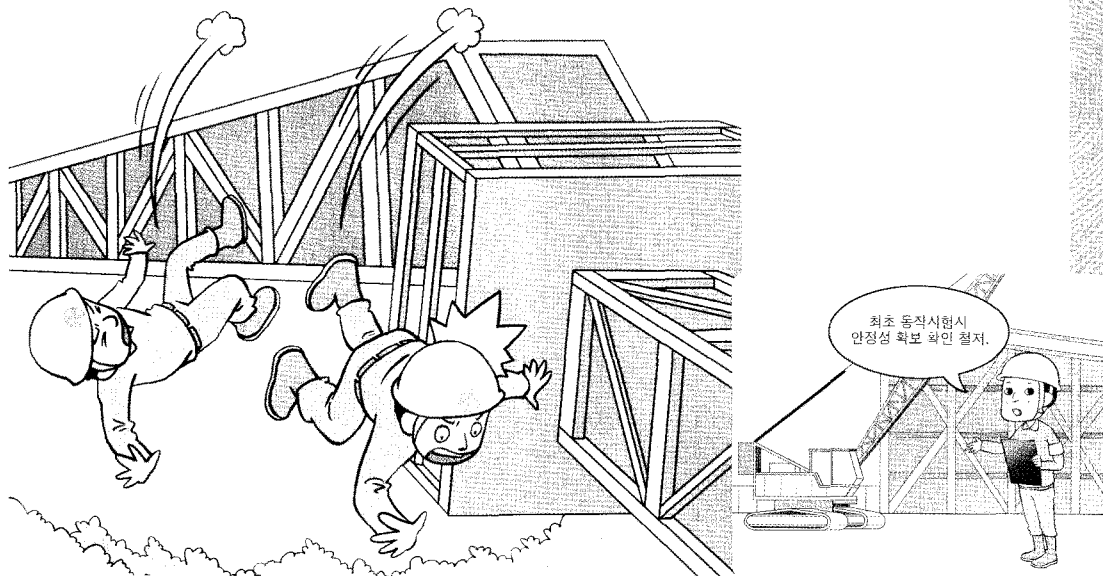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
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철탑 지브크레인이 전도되어 추락

*업종: 건설업 | 생산품: / | 기인물: 바다 | 재해유형: 추락 | 피해정도 인적 사망 1명, 부상 1명



1. 재해발생개요

765KV T/L 현장에서 철탑 조립용 지브크레인 조립후 하중시험을 위해 권상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크레인 상부 발판위에서 운전 실습 교육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

2. 재해발생과정

철탑의 지브크레인의 권상드럼 및 선회부, 지브조립을 완료한 후, 피재자 2명이 지브크레인 상부 콘트롤 패널 발판위에서 운전실습과 과부하 등 하중시험을 위해 하중을 인양하던 중 크레인 고정용 경사지선과 수평지선이 고정용 U형클립에서 풀리면서 지브 크레인이 전도되어 추락,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

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경사지선과 수평지선의 설치 및 고정 작업 부적절
- (2) 운전시작 전 확인절차 미이행

나. 예방대책

- (1) 지브크레인 설치 작업시 설치기준 준수
- (2) 운전시작전 확인절차 이행

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)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